

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998. 11. 11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1998년 11월 19일 (충청북도지사 제출)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1월 19일

다. 상정일자 : 1998년 12월 11일

(제155회정기회 제6차교육사회위원회) 상정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여성정책관 정영애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조직개편에 의한 명칭변경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법령위반 및 불합리한 사항 보완
 - “기금은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”를 “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” 로 함 (안 제10조제2항)
- 행정조직개편에 의한 명칭변경
 - “여성복지과장”을 “여성정책담당사무관” 으로 함 (안 제5조제4항)
 - “사회복지국장”을 “여성정책관” 으로 함 (안 제11조)
 - “생활지도계장”을 “여성정책담당사무관” 으로 함 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문기)

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

행정조직개편에 의한 명칭변경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

- “기금은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”를 “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”로 하고
- “사회복지국장”을 “여성정책관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나. 신구조문대비표